 기획재정부		<b>보도자료</b>	
보도일시	<b>국회본회의 통과시</b>	배포일시	2020. 9. 22.(화)
담당과장	예산총괄과장 박준호 (044-215-7110)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(044-215-7130)	담당자	김영임 서기관 (044-215-7111) 박상우 사무관 (044-215-7131) 구정대 사무관 (044-215-7132)

##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

◇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(화),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

### I. 4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

①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\*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

○ 이에 더하여,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.4조원\*\*의 「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」 마련

\* 피해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34조원 신속추진

\*\* (추경) 7.8조원 + (행정부 자체노력, 기금변경·예비비 등) 4.6조원

②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

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%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

②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(185.6→188.4만명, +2.8만명)

-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(137→161만명, +24만명)

-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·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

③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

④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

**II.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**

□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**18.1%** 증가

- (총지출) 3차 추경 대비 7.8조원 증가 (546.9 → 554.7조원)
- ※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△274억원 감액(5,903억원 증액, △6,177억원 감액)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**△6.1%**, 국가채무비율 **43.9%**

- (관리재정수지) △7.1조원, GDP대비 △0.3%p(△5.8→△6.1%)
- (국가채무) +7.5조원, GDP대비 +0.4%p(43.5 → 43.9%)

	'19년 본예산	'20년						증감	
		본예산	1차 추경	2차 추경	3차 추경(A)	4차		3차대비 (C-A)	정부안 대비 (C-B)
						정부안 (B)	국회확정 (C)		
◇ 총 수입 (증가율)	476.1 (6.5)	481.8 (1.2)	481.6 (1.2)	482.2 (1.3)	470.7 (△1.1)	470.7 (△1.1)	470.7 (△1.1)	-	-
◇ 총 지출 (증가율)	469.6 (9.5)	512.3 (9.1)	523.1 (11.4)	531.1 (13.1)	546.9 (16.5)	554.7 (18.1)	554.7 (18.1)	7.8	△0.03
▪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%)	6.5 (0.3)	△30.5 (△1.5)	△41.5 (△2.1)	△48.9 (△2.5)	△76.2 (△3.9)	△84.0 (△4.4)	△84.0 (△4.4)	△7.8 (△0.5%p)	0.03 (0.0%p)
▪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37.6 (△1.9)	△71.5 (△3.5)	△82.0 (△4.1)	△89.4 (△4.5)	△111.5 (△5.8)	△118.6 (△6.1)	△118.6 (△6.1)	△7.1 (△0.3%p)	0.03 (0.0%p)
▪ 국가채무 (GDP대비,%)	740.8 (37.1)	805.2 (39.8)	815.5 (41.2)	819.0 (41.4)	839.4 (43.5)	846.9 (43.9)	846.9 (43.9)	7.5 (0.4%p)	△0.03 (△0.0%p)

### Ⅲ. 국회 주요 증감 내용 (순감 △274억원)

- ◇ (증액) 방역·학습·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·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5,903억원 증액
- ◇ (감액)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 경비·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△6,177억원 감액

#### 1. 국회 증액: +5,903억원

##### ①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+2,332억원

- (코로나19 백신)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 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
  - 전체 인구의 20%인 1,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1,839억원 반영
- (독감예방접종)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
  - 의료급여 수급권자(70만명), 장애인연금·수당수급자(35만명)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
- (의료인력)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·치유 및 교육·훈련비용 지원 확대
  -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.4만명에 총 179억원 추가지원

##### 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+2,074억원

- (비대면 학습지원) 휴교·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
  - 중학생(132만명), 학교밖아동(6만명) 등 만 13~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,074억원 지원

---

### ③ 고용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 +1,450억원

---

- (법인택시)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
  -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\*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(지자체와 협조)
    - \* '20.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
- (소상공인)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(유흥주점, 콜라텍\*)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
  - \*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,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
  - 총 3.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

---

### ④ 아동학대 예방·보호 +47억원

---

- (인프라)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,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\* 반영
  - \*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·녹음·녹화장비 구입 24억원, 아동보호전담 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,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
- (심리치료)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

## 2. 국회 감액: △6,177억원

- (통신비) 지원대상\*을 고등학교 학령기\*\*·청년·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(9,289→4,083억원, △5,206억원)
  - \* (정부안) 만 13세 이상 전국민 → (국회확정) 만 16~34세, 만 65세 이상
  - \*\* 중학생(만13~15세)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
- (예비비 등) 목적예비비(△500억원), 국고채 이자비용(△396억원),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(△75억원)를 적정수준으로 삭감

## IV. 4차 추경 전체모습

규모	[정부안] 총 7.8조원 → [국회확정] 총 7.8조원		
투자내용		[정부안]	[국회최종]
	<b>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</b>	<b>3.8조원</b>	<b>3.9조원</b>
	▪ 소상공인 경영안정·재기지원 (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)	3.3	3.4
	▪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(신용·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, 긴급경영자금 융자)	0.5	0.5
	<b>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</b>	<b>1.4조원</b>	<b>1.5조원</b>
	▪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	1.0	1.1
	▪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	0.1	0.1
	▪ 실직자 지원 (구직급여·코로나극복 일자리)	0.3	0.3
	<b>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</b>	<b>0.4조원</b>	<b>0.4조원</b>
	▪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	0.4	0.4
▪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(내일 키움 일자리)	0.03	0.02	
<b>④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</b>	<b>2.2조원</b>	<b>1.8조원</b>	
▪ 아동 특별돌봄 지원	1.1	1.3	
▪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	0.1	0.1	
▪ 이동통신요금 지원	0.9	0.4	
▪ 아동학대 예방·보호	-	0.01	
▪ 목적예비비	0.1	0.05	
<b>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</b>	<b>-</b>	<b>0.2조원</b>	
▪ 코로나·독감 등 백신지원	-	0.2	
▪ 의료인력 등 교육·상담·치유 지원	-	0.02	

## 1.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: 3.9조원

- (소상공인 새희망자금)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·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(3.3조원)

	일반업종	집합금지업종	집합제한업종	합계
지원금액	1백만원	2백만원	1.5백만원	1~2백만원
재정소요	2.4조원	0.4조원	0.5조원	3.3조원
수혜 소상공인 수	243.4만명	18.2만명	32.3만명	294만명

- (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)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·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(0.1조원)
- (특례보증)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.5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·기술보증기금 출연(0.2조원)
- (긴급경영안정자금) 영세 중소기업,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(0.3조원)

## 2.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: 1.5조원

- (고용유지지원금)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(16만명), 일반업종 지원 기간 60일(180→240일) 확대(8만명)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(0.5조원)
- (긴급고용안정지원금)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~150만원\*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(0.6조원)
  - \*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 
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
- (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)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(0.1조원)
- (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) 만 18~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(0.1조원)
- (구직급여)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(185.6→188.4만명, 0.2조원)
- (코로나극복 일자리) 방역·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.4만개 제공(0.1조원)

### 3.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: 0.4조원

- (긴급생계지원) 실직·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(0.35조원)
  -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
  - \* 재산기준 : 대도시 3.5 → 6억원, 중소도시 2 → 3.5억원, 농어촌 1.7 → 3억원
- (내일 키움 일자리)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(중위소득 75% 이하)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(0.02조원)

### 4.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: 1.8조원

- (아동특별돌봄)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(1.1조원)
- (비대면 학습지원) 중학생 등 만 13~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(0.2조원)
- (가족돌봄휴가)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 → 20일로 확대 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→ 15일로 확대(0.06조원)
- (유연근무제)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(1.4 → 3.4만명, 0.02조원)
- (이동통신요금)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~34세, 만 65세 이상 2,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(0.4조원)
- (아동보호) 상담시설 보강,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,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(47억원)
- (목적예비비) 향후 방역,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(0.05조원)

### 5.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: 0.2조원

- (백신 지원)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(의료급여 수급권자 등)도 확대(0.2조원)
- (의료인력)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·상담·치유비용 지원 확대(0.02조원)

## V. 향후 계획

- 정부는 9.23(수) 09: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·의결할 계획
-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
  - \* 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아동특별돌봄, 청년특별구직 지원 등 (1,023만명, 6.3조원 규모)
- 국무회의(9.23(수))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
-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·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

### <추석前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>

- ① (새희망자금)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(9.24(목))을 통해 9.25(금)부터 지급 개시
  -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·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
- ② (긴급고용안정지원금) 1차 지원금 既수령 특고·프리랜서(50만명)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.24(목) 집행개시하여 9.29(화) 지급 완료
  - 신규 신청 특고·프리랜서(20만명)는 전용 홈페이지(10.12~23일)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·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
- ③ (아동특별돌봄)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,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, 9.28(월) 집행개시하여 9.29(화) 지급 완료
  -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
- ④ (청년특별구직지원)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·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(9.23(수))하여 9.29(화) 지급개시
  -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(10.12~24일)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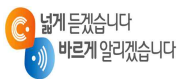


-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

**<여타 주요사업 신속집행방안>**

- ① (통신비) 별도 신청절차 없이,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,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
- ② (긴급생계지원)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, 11월 지급 시작, 12월까지 지급 예정
- ③ (비대면 학습지원)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~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·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

**[ 참고 ]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내역**



기획재정부 대변인  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

**참 고**

**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내역**

구 분	'20년 본예산	1회 추경	2회 추경	3회 추경	4회 추경 (정부안)	(조원)
						4회 추경 (최종)
◇ 총 지 출	512.3	523.1	531.1	546.9	554.7	554.7
1. 보건·복지·고용	180.5	185.5	185.4	194.4	197.3	197.8
2. 교 육	72.6	72.9	72.8	71.0	71.0	71.0
3. 문화·체육·관광	8.0	8.0	8.0	8.1	8.1	8.1
4. 환 경	9.0	9.0	8.8	9.2	9.2	9.2
5. R&D	24.2	24.2	24.2	24.3	24.3	24.3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3.7	27.5	27.3	31.6	35.4	35.5
7. SOC	23.2	23.2	22.4	22.9	22.9	22.9
8. 농림·수산·식품	21.5	21.5	21.3	21.4	21.4	21.4
9. 국 방	50.2	50.2	48.7	48.4	48.4	48.4
10. 외교·통일	5.5	5.5	5.2	5.1	5.1	5.1
11. 공공질서·안전	20.8	21.2	20.8	20.7	20.7	20.7
12. 일반·지방행정	79.0	79.5	91.4	93.6	94.6	94.0